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 수립·시행 등〉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24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 포함	2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 관련 정보의 연계·활 용에 관한 사항 포함	5
IV.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7.
3. 회부연월일 : 2026. 3.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여전히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술금융지원 촉진 시책 포함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현행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연구기관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¹⁾.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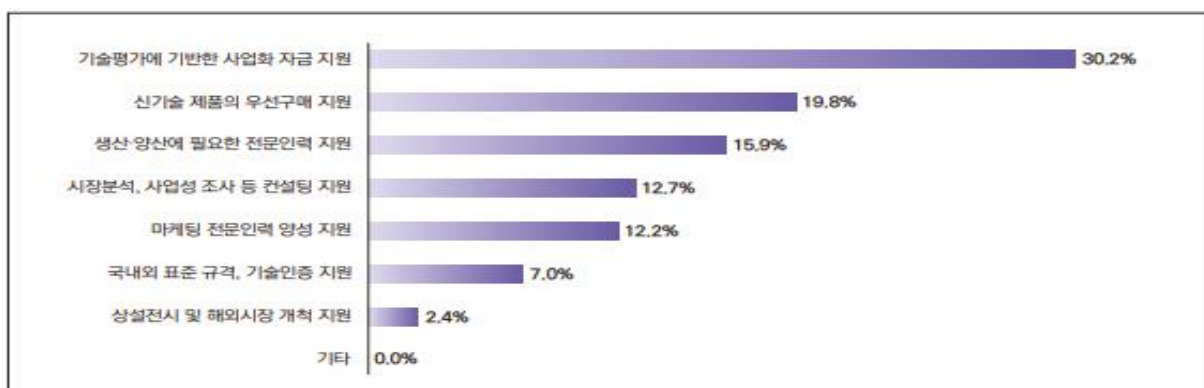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금융지원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술 개발 이후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이 51.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평가 기반 금융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²⁾ 이를 통해 기술력은 우수하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돕고, 담보나 재무제표 중심의 기존 자금공급 관행을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1]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



자료: 2024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74p)

2) 2024년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2024.12.)

- 개발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기술평가에 기반한 사업화 금융지원”이 1순위(30.2%)를 차지

다만, 현행법상 시책 수립 주체별 역할 분담 체계를 고려할 때, 정부에는 기술금융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과하되 독자적인 정책 추진 여력이 상이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 실정에 맞게 기술금융 시책을 재량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금융지원 촉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운영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동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체계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금융지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포함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함)에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 9. (생략) ③ ~ ⑤ (생략)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u> 7. ~ 9.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기술금융지원 확대는 기존의 담보력이나 재무실적 중심의 자금공급 관행을 기술력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의 확보가 필수적임. 기업의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통합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을 촉진계획에 포함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술평가 모델 도입 등 기술금융의 과학화·디지털 전환을 위

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 제5조제2항제6호3)에서 이미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을 촉진계획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기술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활용”이 현행 규정과 내용상 중복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하여 조문 신설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기술금융 관련 정보의 연계 및 활용 목적이 결국 기술력 평가의 정확성과 신뢰도 제고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별도의 호를 신설하기보다 현행 제6호에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 규정하는 방안이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특히, R&D 성공이력, 기술 인력 현황 등 기술 가치평가 데이터 공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 의 처
02) 6788-5467

IV. 참고자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

기술평가 오픈플랫폼(K-TOP) 개요

- **(추진배경)** 혁신기업의 효과적인 선별 및 기술금융 지원을 위해 외부 고객이 평가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 **(개요)** 기보의 AI기반 기술평가 핵심 서비스를 탑재한 개방형 플랫폼
 - **(목적)**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자기주도 혁신 및 금융접근성 향상을 지원하는 기술평가 허브시스템 구축
 - **(기능)** 기술평가모형을 활용한 평가 서비스(자가진단, 일괄평가)를 제공하고, 기업평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
- **(평가모형)** 대외 활용도가 높은 기금의 3가지 핵심 모형으로 구성

기술평가모형	콘텐츠 개요 및 입력정보	
KTRS-FM (신속표준모형)	개요	○ 창업초기기업(3년)과 신속 기술평가에 최적화된 AI기반 평가 모형으로, 자가진단을 통한 기술사업 평가등급 제공
	입력 정보	- 일부 기업 정량정보(동업종 경력, 기술인력, 개발·지식재산권 실적 등) - 26개 내외 체크리스트 문항
혁신성장역량지수 (Tech-Index)	개요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역량을 의미하는 객관적인 지수로서, 기업이 보유한 혁신역량 및 미래성장가능성 등의 정보 제공
	입력 정보	- 10가지 기업 정량정보(동업종 경력, 기술개발·지재권 실적 등) - 일부 재무정보(급여, 개발비 등)
원천기술 평가모델	개요	○ 기술개요 입력만으로 기술이 보유한 원천수준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AI기반 평가모델로, 원천성 등급 및 기술의 위치정보 등 제공
	입력 정보	- 기술개요

- **(활용)** '24.11월 서비스 시행 이후 기업 자가진단, 정책 지원사업 기업 선별*, 기술금융 지원 등에 개방형 기술평가 서비스 적용

* 지원실적('25) : 중기부·지자체 11개 中企 지원사업에 2,458건 평가정보 제공

지원실적('26.01.~03.)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2.0,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 5개 中企 지원사업에 567건 평가정보 제공

2 기술보증 현황 및 '26년 운용계획

□ 보증현황

- (보증잔액) '25. 12월 말 기준 총보증잔액 31조 1,598억원

(단위: 개,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업체수	잔액
총보증잔액	81,965	282,803	82,234	292,207	81,498	311,598
기술보증	81,962	279,176	82,230	284,713	81,492	299,242
유동화보증	3	3,627	4	7,494	6	12,356

- (보증지원) '25. 12월 말 기준 총 31조 9,341억원 보증 공급

(단위: 개, 억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총보증공급	80,321	287,234	80,802	294,791	80,656	319,341
신규보증	12,711	62,948	14,674	59,313	13,141	69,097

□ 2026년 보증운용계획

- (보증규모) '26년도 총보증잔액은 29.5조원 규모로 운용 계획
 - (보증공급) 총 30.1조원 보증을 공급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창업기업 등을 중점 지원